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1098
------	------

2019. 12. 18.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0월 16일, 채인묵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 제11차 기획경제위원회(2019.12.18) 상정, 검토보고, 의결(수정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채인묵 의원)

1. 제안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간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브랜드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동시에 수평적, 개방적 네트워크로 협력과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플랫폼임.

- ‘초연결’ 키워드로 설명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임에도 불구,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육성 대상이 되지 못함.
- 서울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심의 도소매 서비스업의 비중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아, 개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범위의 경제 실현으로 효율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77만 3천여개 서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지역 공동체 회복’과 ‘서울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반 기반 조성(안 제4조)
-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 실시
(안 제7조~안 제11조)
- 다.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지원 기반 마련(안 제13조~안 제15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중기조합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 '중기조합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를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 종류> -----

종류	내용
협동조합	조합구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설립함. 조합원의 소재 범위에 따라 전국조합과 지방조합으로 구분됨.
사업협동조합	특정한 협동사업의 추진을 위해 업종에 상관없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설립함.
협동조합연합회	지방 또는 사업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상위 조직임. 전국 단위의 업종연합회 창설이 가능함.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법정단체

- 현재 서울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특정한 정책과 입법이 없는 실정이나, 5개의 타 시·도(부산·경북·전남·충북·제주)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2019년에 각각 제정하였음.
- 전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940개에 조합원수는 71,812개(종업원 수는 1,529,284명)에 이르며, 이 중 서울시를 주무관청으로 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약 10%인 93개이며 조합원수는 9,162개(종업원 수는 59,571명)에 달함¹⁾.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구분	조합수(개)		조합원수(개)	
	전국	서울시	전국	서울시
전국조합	224	-	22,306	-
지방조합	316	39	31,214	4,842
사업조합	377	54	18,292	4,320
연합회	23	-	-	-
계	940	93	71,812	9,162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이사장이 공석인 경우는 20개(21.5%)이며, 상근임직원이 없는 경우도 17개(18.3%)로 이 중 이사장을 비롯해 상근이사와 직원이 없는 조합은 5개(5.4%)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

1) 조합 수와 조합원 수는 2019년 6월말 기준이며, 종업원 수는 2018년 12월말 기준임(중기중앙회 서울본부 내부자료).

- 한편, 최근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19~2021)’을 발표하면서(2019.11) 공동사업 활성화, 스마트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네트워크 강화, 협동조합의 조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음.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주요 내용>

핵심 전략	주요 정책과제
1.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강화 ② 원·부자재 공동구매 확대 ③ 공동판매 촉진 ④ 공동사업 자금 지원
2. 스마트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조합 생산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업종 공통 R&D 지원 사업 도입 ② 중소기업형 연구조합 육성 및 고도화 ③ 조합 공동 스마트공장 구축 ④ 중소기업 단체표준화 지원 및 활성화
3.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협업 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네트워크 구축 및 지자체 지원 강화 ② 공동사업 능력 배양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③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 촉진 ④ 공동사업 전문 인력 양성 및 채용 지원
4. 협동조합 조직화를 통한 경제 · 사회적 가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원 및 조합원 자격 요건 완화 ② 다양한 유형의 조합 설립 촉진 ③ 협동조합 인식 개선을 통한 조합결성 유도
5. 조합의 행정부담 완화 및 조합 운영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협동조합 실태조사 강화 ② 행정부담 완화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③ 휴먼조합 정비 등 조합 건전성 제고

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소상공인(제1호)', '중소기업자(제2호)', '중소기업협동조합(제3호)'에 대해 정의하면서, 관련 법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기조합법」)의 용어 정의를 인용하였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기조합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p>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 ③ (중략)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p>제3조(종류 등)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p>②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같은 조 제3호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범위에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하고 있으나,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조례안의 구조상 중소기업관련단체를 모두 회원으로 하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관련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적 규모의 민간경제단체로 타 시·도의 조례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지역성을 요건으로 하는 조례의 특성에 따라 서울시를 주무관청으로 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함.
 - ‘중기조합법’에 따르면,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그 외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감독함(제12조).

(2)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안 제3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안을 따르도록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조례안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일반 법규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을 두고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는 본 조례안과는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음.
 - 그런데 타 시·도(부산·경북·전남·충북·제주)는 별도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일반 조례가 없어 중소기업협동조합 조례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안 제3조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조례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으나, 조례안 제정 이후 일반조례와 특별조례 간 입법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책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협력(안 제4조~안 제6조)

- 안 제4조는 시장에게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차별금지, ▶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교육과 홍보 등을 책무로 규정하였음.
- 또한, 안 제5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협업과 공동사업의 적극적인 수행을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상생 협력과 이해증진 등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와 시장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그런데, 안 제6조 제1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과 공동사업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안 제5조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와 중복되고, 안 제6조 제2항은 시장의 책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안 제4조에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중소기업 조직화 촉진(안 제7조)

- 중소기업중앙회 자료²⁾에 따르면, 중소기업 조직화율은 18.6% (658,949사/3,547,101사)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많은 한계가 있는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안 제7조는 시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중소기업중앙회(2018.12). ‘2018 중소기업 현황’

-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³⁾를 참고한 것으로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사업의 추진으로 서울시와 협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4) 역량 강화 지원(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3조)

- 조례안은 시장에게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자문과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안 제8조), ▶ 조합원의 능력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안 제9조), ▶ 업종별 경쟁력 강화 지원(안 제13조)을 수행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소규모 조직으로 경영능력, 인적자원이 열악하다는 측면에서 경영지원과 조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업종별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기여해야 할 것임.

(5) 판로 및 홍보 지원(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6조)

3) 「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장은 ▶ 우선구매와 유통 효율화를 통한 판로촉진(안 제10조), ▶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공유재산의 이용(안 제12조), ▶ 지역사회 및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안 제16조) 등을 지원하도록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뛰어나도 낮은 인지도로 판로를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판로 지원과 함께 기업 및 제품에 대한 홍보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이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공공구매⁴⁾, ‘중기조합법’의 공동전시·판매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 제공⁵⁾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법률에 근거한 우선구매(안 제10조)와 공유재산 지원(안 제12조)은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홍보 지원(안 제16조)을 통해 성공 모델 발굴과 확산 등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6) 자금 지원(안 제11조, 안 제14조)

-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을 위한 우선적 조달계약의 체결,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실적 작성, 판로지원 사업의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 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조례안은 시장에게 ▶ 공동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안 제11조)과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안 제14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금 지원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 가장 수요가 많은 분야로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술 개발과 설비 확충 등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에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음.
-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지원자금을 설치할 계획이며⁶⁾, 안 제11조는 향후 서울시에서 공동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근거가 되어 중소기업의 규모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7) 보조금 지원와 포상 수여(안 제15조, 안 제17조)

- 중소기업중앙회는 총 13개의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기조합법’에 따라 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관내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6)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19~2021)

- 안 제15조는 ‘중기조합법’⁷⁾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서울지역 본부인 서울지회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매년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회 보조금 지원 현황>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15억원	15억원	8억원	13억원	14억원

- 안 제17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시장이 모범이 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여도가 높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라. 종합의견

- ‘중기조합법’ 제정(1961년)과 함께 ‘단체수의계약 제도’⁸⁾ 도입(1965년)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2007년에 폐지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었음.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보조금) ②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8) ‘단체수의계약’은 공동판매사업의 일종으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에 의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임.

- 이에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침체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16~2018)’을 수립·시행하였고, 금년에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19~2021)’을 발표하였음.
- 하지만, 중소기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당 평균 조합원 수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인력과 자금의 부족으로 공동사업이 부진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중 99.9%(종사자의 89.8%)⁹⁾를 차지해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영세한 규모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규모화·조직화와 함께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과 협업이 필요함.
- 조례안은 ‘중기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 경영 지원, 판로 및 홍보 지원,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국가정책과 혁신적 중소기업의 지원·육성하려는 시정방향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

- 다만, 입법의 명확성과 체계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의(안 제2조 제3호)를 수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협력(안 제6조)을 책무 규정으로 조정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안 제14조)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조례안	수정의견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u>중소기업협동조합법</u>」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조례안과 같음)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u>서울시(이하 ‘시’)</u>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u>중소기업협동조합법</u>」 제3조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p>제4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4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조례안과 같음)</p> <p><u>④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u></p>
<p>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u>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협력) ①</u> <u>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u>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u>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u>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u></p> <p>제14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 시장은 <u>중소기업육성기금</u>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비, 시설비 및 설비비 등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p>	<p>제14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 시장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u>중소기업육성기금</u>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비, 시설비 및 설비비 등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p>
---	--

- 아울러, 현재 서울시(경제정책실)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별도의 정책과 사업이 없으므로 향후 조례안이 제정된 후에 입법과 행정이 부조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지역성을 요건으로 하는 조례의 특성에 따라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지역적 범위를 추가하고, 입법의 체계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 규정을 책무 규정으로 조정함.

나. 수정안 주요 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서울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제3호)
-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시장의 책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책무 규정으로 각각 조정함(안 제4조 제4항, 안 제5조 제2항)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1098
------------	--------

제안년월일 : 2019년 12월 18일
제 안 자 : 기 획 경 제 위 원 장

1. 수정이유

- 지역성을 요건으로 하는 조례의 특성에 따라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지역적 범위를 추가하고, 입법의 체계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 규정을 책무 규정으로 조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서울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제3호)
-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시장의 책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책무 규정으로 각각 조정함(안 제4조 제4항, 안 제5조 제2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3호 중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를 “협동조합연합회(서울특별시가 주무관청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중소기업중앙회”로 한다.

안 제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6조를 삭제한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3조까지를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까지로 한다.

안 제14조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하고 안 제13조로 한다.

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까지를 안 제14조에서 안 제17조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u>협동조합연합회</u>, <u>중소기업중앙회</u>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제정안과 같음)</p> <p>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u>협동조합연합회</u>(서울특별시가 주무관청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u>중소기업중앙회</u>를 말한다.</p>
<p>제4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4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제정안과 같음)</p> <p><u>④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u></p>
<p>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u>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 제13조(생략)

제14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비, 시설비 및 설비비 등을 용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 제18조(생략)

<삭제>

제6조 ~ 제12조(제정안과 같음)

제13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 시장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비, 시설비 및 설비비 등을 용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 제17조(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서울시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서울특별시가 주무관청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규칙으로 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반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중소기업 조직화의 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 및 촉진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4. 기타 조합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제 경영활동

제11조(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업종별 경쟁력 강화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업종 및 품목의 경쟁력강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 시장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비, 시설비 및 설비비 등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4. 기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사항

제16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